



안사회계법인 · 829-7575

세계재경저널 Answer

eAnSe.com ··· 2023/6/26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조특법 제16조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절세혜택 (유권해석 필요)

- ㉠ 적용기한 연장: 22년말에 2025년 말까지의 출자·투자금액에도 종합소득공제 적용
- ㉡ 소득공제금액(간접투자): 벤처·신기술사업조합 등, 벤처투자신탁증권 투자액의 10%
- ㉢ 소득공제금액(직접투자)
벤처기업, 창업중소기업,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방식투자는 : 당년도 투자액 3천만원까지 100%, 3천~5천만원까지는 70%, 5천만원 초과액은 30%
- ㉣ 소득공제연한도액: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%(최대한도)
(특정연도 소득이 적으면 향후 2년, 즉 당년과 3년 중에서 소득 많은 1년 선택 신청가능)
- ㉤ 쟁점 1: 특정연도에 여러개 벤처기업에 분산투자한 경우도 각 투자액을 합산하여 ㉣ 100%, 70%, 30% 공제 적용 ≤ 연한도 ㉣
- ㉥ 쟁점 2: 특정 벤처기업에만 올해 출자, 내년에 증자, 3년째 추가 증자투자한 경우도 매년 ㉣ 100%, 70%, 30% 소득공제 적용 ≤ 연한도 ㉣
- ㉦ 쟁점 3: ㉡의 조합등 간접투자소득공제는 매년 적용가능
- ㉧ 결론: 특정연도에 여러 회사 분산투자와 여러연도에 걸쳐 한 회사에만 출자+증자, 2차증자 투자 등도 모두 ㉡와 ㉢를 적용하여, ㉣한도내에서 종합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해석됨(국세청 유권해석 확인 필요)